

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

- ◆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(2020.1.1.)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학점을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나,
 - 법령 시행 전에 사전실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현장실습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□ 개정법령 개요

-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663호, 2019.8.12.)을 개정하여 시행(2020.1.1.) 중
 - 동 규칙 시행(2020.1.1.) 당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변경법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고,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실시

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

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·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국제사회복지론,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,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.

나.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

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, 앞으로는 **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** 및 대학·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 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.

□ 문제점

-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학점 이수 학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등에서 현장실습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
 - 일부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이 사전실습을 관행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제 실습시기(개정 前)와 학점 이수시기(개정 後)의 시차로 이미 실시한 사전실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

□ 조치사항

-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(2020.1.1.) 교과목 수강신청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실습을 미리 실시한 사람이 법령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
 - 교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* 동 조치사항은 법령의 집행 기준 변경이 아니고, 해당자에 대한 구제방안임

□ 행정사항

- (대상학생) 동 조치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붙임 ‘사전실습 확인서’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
- (협회) ❶ 동 조치에 따른 자격발급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집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❷ 그간 일부 대학의 사전실습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‘한국사회복지사협회’와 ‘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’ 공동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표준운영안 마련

※ 제출양식

학교	학과	지도교수	자격발급일	발급학생수

붙임

사전실습 확인서

사전실습확인서 [해당자]

실 습 생 인적사항	성 명		생 년 월 일	※ '주민등록번호' 앞자리 6개
	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	
교육기관 확인사항	학교명		학과명	
	실습지도교수명			
	사전실습사유			
	실습의뢰일	(실습의뢰공문발송일자)		
	실습기간	20__년 __월 __일 ~ 20__년 __월 __일		
	교과목수강기간	20__년 __월 __일 ~ 20__년 __월 __일		

상기 실습생은 이상과 같이 실습수업을 진행하여 ()년 ()학기에 ()학점을 이수하였으며 지도교수인 ()교수의 지도와 책임 하에 실습교과목 이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 도 교 수: (서명 또는 인)

학 과 장: (직 인)

한국사회복지사업회장 귀하

○ 증빙서류 안내

- 19년 실습 후 20년 수업 이수 시 : (학교→기관) 실습의뢰공문, 사전실습확인서
- 군 휴학 : 주민등록초본, (학교→기관) 실습의뢰공문, 사전실습확인서
- 질병휴학 : 진단서, (학교→기관) 실습의뢰공문, 사전실습확인서
- 교환학생 : 출입국사실증명서, 교환학생증명서, (학교→기관) 실습의뢰공문, 사전실습확인서